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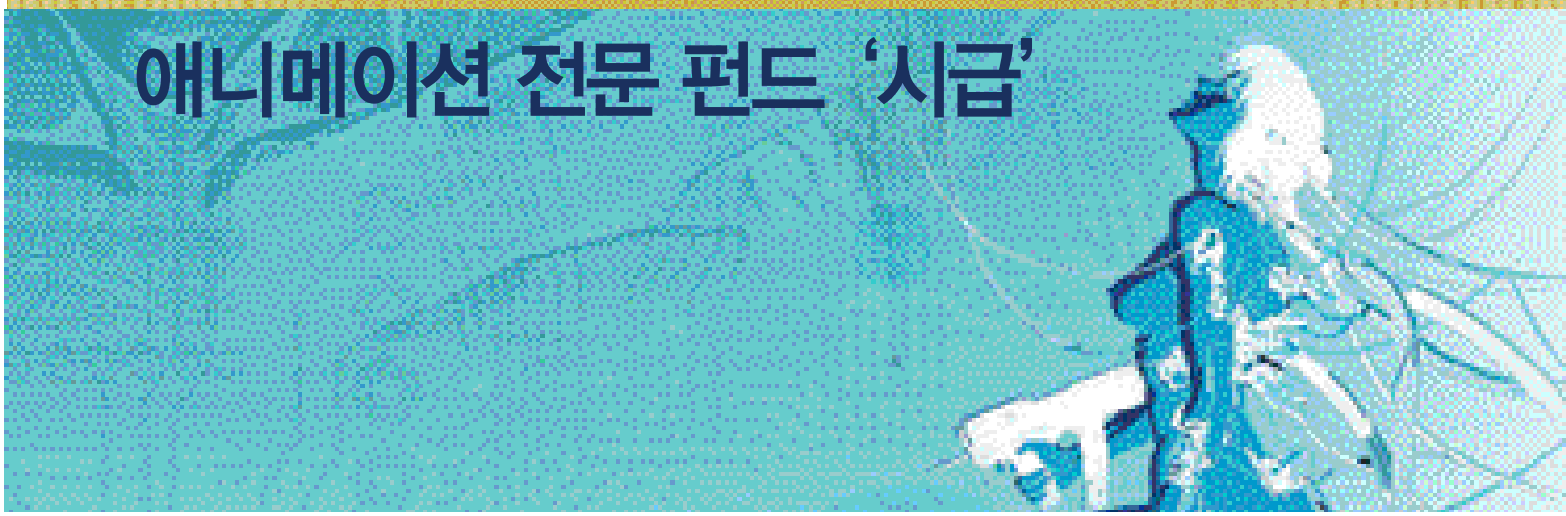

국내 영화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스크린쿼터제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됐다. FTA라는 거대한 파도를 결국 넘지 못한 것.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에는 방송 · 통신 · 의료 · 교육 등 무수한 분야에서 FTA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니메이션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갓 해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글 **최돈일** 경기대학교 애니메이션 전공 교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및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써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 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협상대상이 상품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 지적재산권 · 투자 · 정부조달 · 환경 · 노동 등 협상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FTA는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이후부터 다자간 무역체제인 GATT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이후에는 협정체결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게다가 그동안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미국이 1990년대 이후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여 FTA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중심 국인 미국의 입장변화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표 1〉 한미 FTA 주요 일정

협상일정	협상내용
2006년 2월 2일	한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06년 2월~5월	예비협상진행
2006년 5월~ 2007년 3월	본 협상진행 및 완료(2007년 3월 31일 까지 본 협상 완료 예정)
2007년 4월~6월	미 의회 검토기간
2007년 6월 30일	미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 소멸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계는 회원국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국가 간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FTA를 선호하게 된 것도 확산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주체가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개개 기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FTA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한미 FTA 협정에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협상 쟁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KOBACO 해체 및 미디어렙 도입 요구

미국의 '2005무역장벽보고서'는 수년 째 6년 전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영업 독점 해소를 약속한 한국이 왜 아직까지도 KOBACO 독점 해체와 더불어 미디어렙을 도입하지 않느냐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방송의 기본이념이자 목표인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 KOBACO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독립'과 '여론과 문화의 다양성 수호'를 위해서도 그렇다. 또한 KOBACO가 존재함으로써 중소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가 유지된다. 시청률 높은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집중될 수 있는 광고물량이 KOBACO를 거치면서 중소지상파방송사에도 할당됨으로써 극단적인 상업주의 또는 오늘의 신문시장 위기를 불러왔던 '무한경쟁체제'의 부작용을 상당부분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대형 광고주와 대형 광고대행사의 방송광고시간에 대한 과점에 대해서도 KOBACO가 존재함으로써 균형을 잡는다. 이런 측면은 미국기업의 한국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마저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금지 조항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2005 무역장벽보고서 中

지상파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금지 규제 완화 요구

Foreign Content Quota for Free Terrestrial TV

Korea restricts foreign activities in the free television sector by limiting the percentage of monthly broadcasting time (not to exceed 20 percent) that may be devoted to imported programs. Annual quotas also limit broadcasts of foreign programming to a maximum of 75 percent for motion pictures, 55 percent for animation, and 40 percent for popular music. Foreign investment is not permitted for terrestrial television operations.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단락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대한 불만이며, 이후 단락은 지상파 방송의 소유 지분 참여 규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 고시를 살펴보면,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방송은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70이상, 교육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100분의 80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이상을 편성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국내 케이블방송 및 위성방송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지분제한의 규제 완화와 외국방송 재송신의 더빙금지 및 방송편성금지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우, 특종기사 등에 자막처리는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어 더빙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방안-3.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표 2〉참조)

미국 2005 무역장벽보고서 中

케이블/위성방송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지분 제한 규제 완화 요구

Foreign Content Quota for Cable TV

Korea restricts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cable television sector by limiting per channel airtime for most foreign programming to 50 percent. Annual quotas for broadcast motion pictures are set at 70 percent and for animation at 60 percent. These restrictions limit foreign access and the development of Korea's film and animation industries.
The Korean government also restricts foreign ownership of cable television-related system operators, network operators, and program providers to 49 percent.
For satellite broadcasts, foreign participation is limited to 33 percent.

〈표 2〉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

심사사항 (방송법시행령 제61조제3항)	심사평가정	세부평가기준
I. 방송매체 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중점심사	•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당해 외국방송 재송신이 국내 방송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매체간 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 국내 방송 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 방송법에서 편성비율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방송분야(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기타사항〉 • 외국방송의 한국어 더빙은 허용하지 않음 : 국내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 채널성격(국내 PP와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의 차별성이 없어짐), 외국방송의 재송신 승인의 취지(단순 재송신)를 고려 • 국내 방송의 자국내 재송신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등에 대해서는 자국내의 제한기준에 준한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 (국가간 상호호혜)

현재 세계 애니메이션산업은 TV를 통해 자국의 창작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즉, TV를 통해 검증된 애니메이션은 극장 · 게임 · 캐릭터산업 혹은 테마파크 등의 관련 산업으로 확장시켜 애니메이션의 산업구조를 견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제 막 창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탄한 산업구조를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 에 따른 방송미디어의 협상쟁점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애니메이션산업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 지속돼야

만약 현재 시행중인 전체 방송시간의 1%를 신작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의무방영 하는 총량제가 사라질 경우 제작이 중단되는 신작애니메이션은 2만2,600분(24시간×60분×365일×4개방송사×0.01=2만1,024분 제작, EBS 1,578분 제작)으로 30분물 26부작 기준으로 28편(30분 기준, 총 728 에피소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송사의 관행으로 볼 때 총량제가 사라지면 KBS를 중심으로 연간 4~5편 정도의 형식적인 제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990년대 10년간 방송용 애니메이션 총 제작편수 50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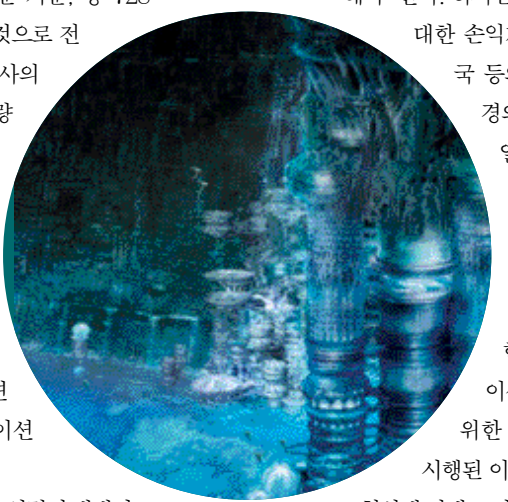

이는 곧 관련 산업 인력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1년에 26부작 1편을 제작할 때 약 200명의 인력이 투입되므로 28편이 사라지면 약 5,600명의 인력이 애니메이션업계를 떠나야 하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애니메이션구조의 변화를 넘어 애니메이션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2,300여명의 예비취업인력에게도 크나큰 절망감을 안겨줄 심각한 문제다.

영상산업의 큰 틀에서 영상콘텐츠산업의 핵심 분야인 애니메이션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게다가 미국 애니메이션은 이미 국내에서 일본 작품과 비교할 때 경쟁 상대가 되지 않으므로 완전 개방의 실질 혜택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아니라 90% 이상을 일본에서 얻어 갈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면 FTA라는 거대한 전세계적 조류 속에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보호 · 육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은 무엇인가.

전문 애니메이션 펀드 설립 필요

창작구조와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배급 및 마케팅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애니메이션 산업과 환경을 고려할 때 스스로의 기반으로는 대외 경쟁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우선 다양한 방식의 해외 합작과 중국, 인도 등의 거대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도 문화산업에 대한 손익계산에 익숙한 중국 등의 문화적 무역환경의 벽이 높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현재 방송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량제 1%는 최소 5년 이상 지속돼야 한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화의 조치로 시행된 이 제도가 한미FTA 협상에 의해 조기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국가영상콘텐츠의 핵심 분야인 애니메이션의 활성화를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설립과 모태 펀드 활용을 위한 전문 애니메이션 펀드가 설립되어야할 것이다.

FTA 협상에 있어서도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출판 · 인쇄 · 방송서비스 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미국의 경우도 방송사의 투자지분 문제는 외국에 전면 개방하지 않고 있다.

시장 개방과 자국 산업 보호라는 결코 양립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안에 대해 정부가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

방송위원회 고시 제2005-2호

케이블/위성방송의 편성쿼터 규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 :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다.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제외, 이하 동일) :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국내제작 영화의 경우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 위성방송 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 위성방송 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다.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가호와 나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2)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제작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수입한 외국의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내.